

## 1. 지적유형(제목) : 재산종합보험 보험요율부당적용

## 2. 제재대상사실

- 「보험업법」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, ○○보험사 재산종합보험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 Ⅱ.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보험계약 체결시 재보험자와의 협의 요율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는데도

2005.1~2008.8 기간 중 회사는 196건(보험료 : 138억 53백만원)의 재물보험 계약을 인수하면서 기초서류에 명시된 “재보험자 협의요율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보험요율을 홍콩 소재 재보험중개사와 공모하여 “재보험자와의 협의요율”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

## 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
임 원	견책 3명
직 원	

### 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127조(기초서류변경의 신고)
2. ○○보험사 재산종합보험의 기초서류